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6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 규정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제정

○ 관허사업등의 제한(안 제3조)

○ 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(안 제4조)

○ 군세의 수납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세기본법』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〔기획감사실-2653(‘17.3.20)〕

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17622(‘17.3.21)〕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: ‘17.3.23~ ’17.4.12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성주군 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관허사업의 제한)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제5조(군세의 수납)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「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·도서지역·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.
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”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(가산금을 제외한다)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.

제6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해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」 규정에 따른다.

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